

# 協會動靜

## 江原道支部 編

◇ 江原道 春川市の「建築設計手数料徴收條例」는 不當. 江原道支部서 是正 建議.

春川市 当局이 지난 8月29日字로 公布한 「建築設計手数料徴收 條例」는 主務部處에 依해 不當하다고 지적한 바- 이에 따라 大韓建築士協會 江原道支部는 市当局의 建築設計事務 代行은 違法處事라고 지적 곧 是正해 줄 것을 要望, 当局에 建議文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.

수 신 : 춘천시장

제 목 : 춘천시 건축설계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한 시정 건의

귀 시의 건축민원 쇄신책으로서 건축사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공포 시행중에 있는 춘천시 건축설계 수수료 징수 조례 (춘천시 조례 제653호 74. 8. 29)는 본협회 건축사 회원의 업무를 제한하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사료됨으로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성을 들어 건의하오니 조속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규정한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 5 조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한계를 규정하였는바 귀하가 이를 적용 별지 내용과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법정신에 어긋나는 모순된 행위라고 보며,

2. 건축사 업무에 대한 영업행위는 건축사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 개설 등록 (지방장관)을 필한 건축사 회원이어야 하며 등록을 앓고 타인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업무행위는 동법 제 25 조 (무등록업무행위금지)에 저촉되는 것입니다.

3. 건축사 회원의 설계보수 (수수료)는 건축사법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고 (판보 또는 일간신문)된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에 의함으로 귀하가 임의 조례 (영당 500원)로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며.

4. 건축법상 도시계획 구역내 (방화지구)에서는 사실상 목조건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가 직접 목조 20평을 설계 허가함은 목조 건축의 문호를 개방 장려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되어 관광지구 도시미관과 그 면모를 영구히 망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
5. 조례는 법규정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특정인의 업무법인 건축사법에 근거함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며 귀하 (시장. 군수)가 건축사법 제 5 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부장관이 별도로 건축법 제 53 조 6 항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작성 배부된 표준설계도서 (15평 주택 30여종)의 운영 관리 보급 판매에 한하며

6. 건축행정은 건축법에 건축주·건축사 (시공자) 및 관계 공무원의 업무한계 (건축설계허가신청 - 서류접수검토 - 현장확인허가 - 착공신고 (관계 공무원입회 사진촬영) - 감리·감독 - 준공신고 - 준공검사 (완공사진첨부) - 필증교부)가 구분 규정되고 있어 각기 그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나 일방적인 단독처리로서 일어나는 횡포와 부정·부패 등 민폐의 요인을 여하히 방지하며 막대한 민원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.

7. 이상의 문제점등으로 보아 귀 시에서 건축민원 쇄신책으로 제정된 동 조례는 실효성 없는 행정의 전시 효과만을 노린데 불과하며 민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위법 부조리한 업무 행위를 즉각 시정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지부

지부장 이 상 철